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시행 2023. 6.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2023. 5. 23., 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7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
- 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 수 기준 예시 >

구분	가로픽셀(A)	세로픽셀(B)	값(A×B)	해상도
HD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Full HD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92호, 2023.5.23.>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